

출생자녀가 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

결혼이민(F-6)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 【주호치민총영사관】		
인적사항	사증발급 신청인(외국인)	초청인(한국인)
성명		
생년월일		
국적		
주소		
연락처		
심사면제 받고자 하는 요건(아래 각 요건의 □에 √표시)		
☐	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는지 여부(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)	
☐	초청인이 고시된 금액이상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(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)	
☐	초청인과 신청인의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(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)	
☐	신청인이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(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)	
☐	신청인이 사증발급 불허 후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(시행규칙 제9조의5제3항)	
1. 신청인 _____은(는) 한국인 _____의 배우자이며, _____년 _____월 _____일 주호치민총영사관에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.		
2. 신청인과 초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은 _____ (생년월일: _____년 _____월 _____일, 성별: 남/여 , 국적: _____입니다.		
3. 신청인과 초청인은, 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(외국인등록 전)에 친자관계(부와 자녀, 모와 자녀)를 확인*받도록 하겠습니다. *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출석하여 시료채취 후 검사 의뢰 또는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 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한 기관 중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친자관계 확인 후 그 결과(공공기관 제출용도로 발급)를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제출		
4. 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출생한 자녀가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요건심사 면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요건심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.		
본인(신청인)은 위 안내(주의)사항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, 표시된 요건의 심사면제를 요청합니다.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성명 _____ (인)		본인(한국인 배우자)은 위 안내(주의)사항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, 표시된 요건의 심사면제를 요청합니다.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성명 _____ (인)